

혁신법 (21년 01월 1일 개정)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감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숙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4.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영 제19조제4항제3호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 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7.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8.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9.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도입비를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한다.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영리기관 사무용품비 집행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1-04-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21년 국토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영리기관 사무용품비 집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따르면, 소모성의 사무용품만 집행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반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제 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 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제 10조 부분은 소모성 비용 가능, 제 68조 부분은 소모성 비용 불가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규정이 상반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안에서도 10조와 68조 부분이 상이하여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2021년 국토부 과제이며, 소모성 비용의 사무용품비 집행이 가능한건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답변자	이성희	답변일	2021-05-04
-----	-----	-----	------------

=

안녕하세요.

'21년 과제를 수행하시는 경우 연구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주신 내용 중,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에서는 전체 연구개발기관(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비영리, 영리)의 연구활동비 사용용도에 대한 내용을 기준하고 있으며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에서는 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에 대하여 기준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 따라 영리를 제외한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있으며 제68조에 따라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으나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매를 위한 비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명시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